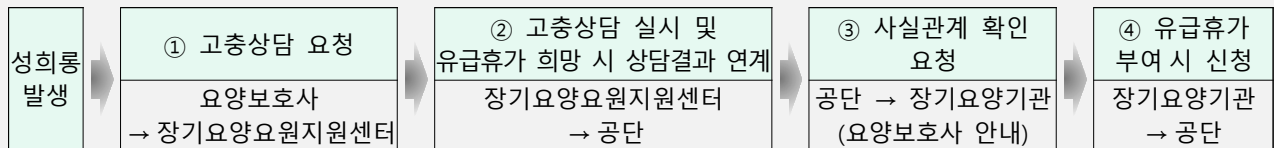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목적)** 성희롱 피해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심신 안정 지원
- **(사업기간)** '25년 6월 ~ '25년 11월(6개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대상) '25. 1. 1.~11. 30. 동안 성희롱 피해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상담 연계 건 포함
- **(사업내용)**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고충 상담으로 연계된 성희롱 피해 건에 대해 장기요양기관에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비용 지원
※ 단,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제외
- **(사업지역)** 서울·인천·경기지역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 **(사업절차)**



※ 고충상담 센터: (서울) ☎ 1544-7315, (인천) ☎ 032-715-7684, (경기) ☎ 031-837-8579

- ①·②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고충상담 요청 및 상담결과 공단 연계
- ③ 유급휴가를 희망하는 경우 공단에서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 ④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 부여 시 공단 비용 지급 신청
- **(제출서류)** 고충상담 연계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서류 제출(팩스, 우편)

신청 시 제출 서류

- | | |
|------------------|--------------------|
| ①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

- **(지원금액)** 유급 휴가일수에 따라 휴가비 지원(최대 5일, 276,750원)
- 일 55,35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 접수

- (신청대상) 성희롱 피해 고충사유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고충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가 연계된 장기요양기관장(또는 시설장)이 후속 조치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방문 요양보호사
 - ※ 단순 성희롱 피해의 고충만으로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유급휴가 부여 필수)
- (신청인) 방문형 재가 장기요양기관 대표 또는 시설장(서울·인천·경기 지역)
- (신청방법) 우편, 팩스(033-749-6374)

-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23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 (팩스번호) 033-749-637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 제출서류

- 신청서에 유급휴가 지원 대상 요양보호사 서명 기재하여 제출
 - ① (서식1)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1부
 - ② (서식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1부
 - ③ (서식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각 1부
 - ④ (서식4) 계좌입금의뢰 신고서 1부
 - ⑤ (지급 필요서류) 신분증 사본(신청인, 요양보호사), 통장 사본(장기요양기관), 4대 보험 완납확인서 각 1부

□ 안내사항

- 제출서류 등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 제외 및 사업 시행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문의처: 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033-736-1930~2)

Q1

유급휴가 조치 시 종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건가요?

- ▶ 아니요,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경우 해당 수급자와의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의 적절한 조치를 받고 심신 안정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급자에 대해서만 급여중단(유급휴가) 조치를 하고, 그외 같은 날에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는 다른 수급자와의 급여제공은 가능합니다.

Q2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해소 요청 시 조치를 꼭 해야하나요?

- ▶ 예,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39조4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이 지자체에 시정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는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행 2024.7.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3

성희롱에 대한 조치 및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 ▶ 고객 등에 의해 발생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따라,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희롱은 추행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1차적으로 기관 내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성희롱을 해결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 ▶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1]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지급받은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이 되나요?**

- ▶ 아니요, 유급휴가비 지원 금액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아닌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시범사업 사업비로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2

Q5**유급휴가비 지원 절차와 요양보호사에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 ▶ 성희롱 고충 피해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유급휴가 부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공단에 상담 결과가 연계됩니다.
- ▶ 공단은 상담 결과를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사실관계 판단 후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공단에 지원 신청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지급 받을 계좌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계좌와 동일한 계좌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 지급 받은 유급휴가비 지원 비용은 소득세법 제4조에 열거한 종합소득이며,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세입처리 시 총 수입금액(잡이익 처리 등)에 산입하고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제외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784)

Q6**과거 발생한 성희롱 피해로 유급휴가 조치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본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25년 6월 ~ 11월입니다.
- ▶ 다만, 과거('25. 1. 1.~) 발생한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중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을 하고 공단 연계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또한, 과거('25. 1. 1.~) 장기요양기관에서 성희롱 피해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을 경우, 과거 일어난 상황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고충상담을 받고, 공단 연계 후 유급휴가 부여한 사실을 공단으로 신청하여 비용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속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만 대상)

Q7**사업대상을 서울·인천·경기 지역 소재 기관에 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근무현황 등을 고려, 해당 지역을 선정하여 운영됨을 안내드립니다.

Q8

공단으로부터 고충상담 결과를 통보 받았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이 있나요?

- ▶ 아니요, 공단은 해당 요양보호사가 성희롱 피해로 고충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를 하는 것이고,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한 고충해소 조치의 의무는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통보 유무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으며, 다만, 고충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39조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Q2 참고)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 신청인 (대표 또는 시설장)	기관명:	장기요양기관기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② 종사자 (요양보호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유급휴가	유급휴가 부여 (~), ()일		
	신청 사유: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원, ()일 X 55,350원		
③ 지급계좌 (장기요양기관)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신청인)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사자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수수료 없음
	필수 제출	①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③ 계좌입금의뢰신고서 ④ 통장 사본 ⑤ 4대 보험 완납 확인서 ⑥ 신분증(신청인, 종사자)	

- ①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② 성희롱 인권침해 피해 종사자 성명,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③ 신청인 계좌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장기요양급여비용 수령 계좌 기재)
※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하며, 타인의 계좌번호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1. 성희롱 인권침해 피해 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만 유급휴가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받은 유급휴가비는 종사자에게 지급을 해야하며 인건비 지출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graph LR
    A[신청서 작성  
장기요양기관 → 공단] --> B[접수 및 심사  
공단]
    B --> C[지 급  
공단 → 장기요양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에 따라 근로자(요양보호사)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장기요양기관의 장)는 공단으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장기요양기관명		성명 (대표 또는 시설장)	
요양보호사 성명		요양보호사 생년월일	
유급휴가 (일수)	(일)	유급휴가 사유	성희롱 피해

1. 사업주는 위와 같이 성희롱 피해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만일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2025. . . .

대표(또는 시설장) : (서명)

요양보호사 : (서명)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대표 · 시설장 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장기요양급여 계약 현황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100 100 100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보호사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접수,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요양보호사 근무 현황, 신청 사유, 유급휴가 부여일
-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 ④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서식4】 계좌입금의뢰신고서

계좌입금의뢰신고서

귀 공단과의 계약거래에 따른 본인(사)의 채권에 대하여 아래에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개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사 업 자	상 호	
	주 소	
	대표자성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유의사항

- ① 본 신고서에 기입된 계좌 외 추가·변경 등록이 필요한 경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전항의 신고 전에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예금주명, 은행명 및 계좌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통장사본 등)를 같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업담당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귀중

【서식5】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취소 요청서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신청 취소 요청서

신청인 (대표 또는 시설장)	장기요양기관명		장기요양기관번호	
	성명		생년월일	
	기관 소재지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종사자 (요양보호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취소 사유				
상기인은 인권침해(성희롱) 피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신청에 대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종사자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2. 종사자 신분증 사본 1부.			